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16. 8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1장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1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1.2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협의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
-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구미시장, 칠곡군수, 경산시청, 대구광역시 시장,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북구·수성구청장·달성군수

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한겨레
- 지방일간지 : 경북매일
- 정보통신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4 주요 공고·공람 내용

-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6. 04. 14 ~ 2016. 05. 07 (20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 장소	구미시	구미시청 도로과
	칠곡군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경산시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건설교통국 철도건설추진단, 중구 교통과, 동구 교통과, 서구 교통과, 북구 교통과, 수성구 교통과, 달성군 교통과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2016년 05월 14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1.5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구미시	2016. 04. 22(금요일), 10:00	사곡새마을금고	63명
대구광역시	2016. 04. 22(금요일), 15:00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17명
합계			80명

1.6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한겨레(중앙일간지)

경북매일(지방일간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82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라. 사 업 기 간 : 2016년 ~ 2019년
마. 사 업 규 모 : 구미 ~ 대구 ~ 경산간 61.9km 광역철도 건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4월 14일 ~ 2016년 5월 7일(20일간)
나. 공람장소

구 분	공 랑 장 소	비 고
구미시	구미시청 도로과	
칠곡군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건설교통국 철도건설추진단, 중구 교통과, 동구 교통과, 서구 교통과, 북구 교통과, 수성구 교통과, 달성군 교통과	
경산시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구미시, 칠곡군	2016. 4.22(금), 10:00	구미시 사곡동 사곡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경산시	2016. 4.22(금), 1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4.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당해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나. 제출기간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6년 5월 14일 17:30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042-20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82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라. 사 업 기 간 : 2016년 ~ 2019년
마. 사 업 규 모 : 구미 ~ 대구 ~ 경산간 61.9km 광역철도 건설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4월 14일 ~ 2016년 5월 7일(20일간)
나. 공람장소

구 분	공 랑 장 소	비 고
구미시	구미시청 도로과	
칠곡군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건설교통국 철도건설추진단, 중구 교통과, 동구 교통과, 서구 교통과, 북구 교통과, 수성구 교통과, 달성군 교통과	
경산시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구미시, 칠곡군	2016. 4.22(금), 10:00	구미시 사곡동 사곡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경산시	2016. 4.22(금), 15:0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4. 주민의견 제출

가. 대 상 : 당해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나. 제출기간 : 공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6년 5월 14일 17:30까지)
다. 제출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042-20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3.0 정보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뉴스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책마당

기관소개

알림마당

공지사항

인사발령

일자리정보

자격시험안내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정부포상

정부정책영상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제목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송대홍 전화번호 044-201-3957 등록일 2016-04-14 조회 238

첨부파일 1

요약문(대구권_광역철도_전략환경)수정1.pdf (5639Kbyte)

첨부파일 2

공고문(대구권_광역철도_전략환경)(1).hwp (31Kbyte)

공고 제2016-4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

정보통신망 : EIASS 등 제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협의업무 담당

협의기관	환경부	담당자	박광규
담당부서		E-mail	moc189@hanmail.net
전화번호	02--	Fax번호	02--

초안공람

초안요약서	[ME20160043]A0(대구권 광역철도)요약서_160414.pdf		
초안	[ME20160043]A0(초안)0000_표지, 세네카, 목차.pdf		
	[ME20160043]A0(초안)0100_요약문(1-14).pdf		
	[ME20160043]A0(초안)0200_개발기본계획의 개요(15-26).pdf		
	[ME20160043]A0(초안)0300_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27-32).pdf		
	[ME20160043]A0(초안)0400_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33-40).pdf		
	[ME20160043]A0(초안)0500_지역개발(41-76).pdf		
	[ME20160043]A0(초안)0600_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 심의내용(77-90).pdf		
	[ME20160043]A0(초안)0700_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91-102).pdf		
	[ME20160043]A0(초안)0800_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103-150).pdf		
	[ME20160043]A0(초안)0911_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151-245).pdf		
	[ME20160043]A0(초안)0912_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246-254).pdf		
	[ME20160043]A0(초안)0913_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255-270).pdf		
	[ME20160043]A0(초안)0914_수환경의 보전(271-293).pdf		
	[ME20160043]A0(초안)0921_환경기준의 부합성(기상,대기질,소음진동,토양)(294-368).pdf		
	[ME20160043]A0(초안)0922_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369-376).pdf		
	[ME20160043]A0(초안)0923_자원에너지 순환의 필요성(자원순환,온실가스)(377-394).pdf		
	[ME20160043]A0(초안)0931_친환경적 토지이용(395-432).pdf		
	[ME20160043]A0(초안)0932_민구주거(433-438).pdf		
	[ME20160043]A0(초안)1000_종합평가 및 결론(439-446).pdf		
	[ME20160043]A0(초안)1100_부록(447-491).pdf		
초안 공고일	2016.04.14	초안공람기간	2016.04.14 ~ 2016.05.07
공람장소	구미시청 도로과, 칠곡군청 건설방재과, 대구광역시청 건설교통국 철도건설추진단, 중구 교통과, 동구 교통과, 서구 교통과, 북구 교통과, 수성구 교통과, 달성군 교통과,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설명회장소	구미시 사곡동 사곡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설명회일시	2016년 04월 22일(구미시 사곡동 사곡새마을금고 10시, 대구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15시)	의견제출기간	2016.04.14 ~ 2016.05.14

1.7 주민설명회 사진



구미시 사곡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문화센터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2.1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 주민의견 제출자

구분	주민의견 제출자	공청회 개최 요청자	비고
의견수렴 결과	41명	31명	

나. 공청회 개최 여부

-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청회 개최여부 검토결과 초안관련 주민의견 제출자는 총 41명이며, 이중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주민은 31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을 충족함

<표 1-1> 공청회 개최여부 검토결과

구분	개최요건	검토결과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해당함 (31명)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함 (31명, 78%)
3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없음

1) 공청회 개최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2) 공청회 개최 결과

가) 공청회 공고

- 중앙일간지 : 한겨레
- 지방일간지 : 경북매일

나) 공청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대구광역시	2016. 06. 08(수요일), 15:00	서구청 3층 대회의실	31명(관계자 제외)

다) 공청회 개최 공고문

한겨레(중앙일간지)	경북매일(지방일간지)
2016년 5월24일 화요일 한겨레 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69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라.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마. 사업규모 : 구미~대구~경산간 61.9km 광역철도 건설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 6. 8(수) 오후 3시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3층 대회의실 3. 기타사항 가.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 기 간 :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전 까지 - 제출내용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cj9256@korea.kr)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044-20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69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①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라.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마. 사업규모 : 구미 ~ 대구 ~ 경산간 61.9km 광역철도 건설 ②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6. 6. 8(수) 오후 3시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3층 대회의실 ③ 기타사항 가.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 기 간 :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전 까지 - 제출내용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cj9256@korea.kr)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044-20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청회 개최 사진



대구광역시 서구청(3층 대회의실)

마) 공청회 개최 결과 통보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업명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사업자	국토교통부		
공청회 주재자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		
개최일시	2016. 06. 08 15:00		
개최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 3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주재자 1인, 사업자측 패널 4인, 주민대표 패널 3인, 참석주민 23인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참조	
	사업자 의견	별지참조	
	의견진술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 요지	별지참조	
	사업자 의견	별지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알립니다.

2016 년 6 월 10 일

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의견진술자 포함) 명단 1부

처리절차

공청회 개최 요구

주민

→

접수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개최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

공청회 개최결과 통보

사업자 또는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 명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패널명단			
사업명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장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일원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일 시	2016. 6. 8(수) 15:00	공청회 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 3층 대회의실
토 론 자			
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좌장	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공청회 주재
사업자측 대표패널	최우승	(주)KRTC 부사장	철도전문가
	전경열	(주)이산 상무	환경전문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교통전문가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팀장	교통전문가
주민측 대표패널	성상용	대구광역시 주민	불참
	조현준	대구광역시 주민	참석
	김효동	대구광역시 주민	참석
	이원형	대구광역시 주민	참석

[별지] 의견진술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조현준(주민대표패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822	전화번호 010-4343-6939
	진술 요지	1. 원대역이 신설 되지 않으면 기존 경부선과 다를 것이 없으며 예비타당성에 신설 계획이었던 원대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2. 예산이 부족해서 역사 계획이 무산됐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경산역 비용(약 140억)을 제외하고 원대역을 신설하는 방법은 없는지 3. 원대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향후 원대역 설치가 필요한데, 후속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바람 4. 예산이 초과된다면 기존 철도차량(무궁화 호 증편)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바람	
	사업자 의견	1. 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기본계획 수행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업비(시스템분야, 차량기지 등)가 있었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예타대비 20%)에 해당되었음 ○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재조사 요건 이내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용수요가 적은 순으로 왜관공단역과 원대역을 장래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2. 경산 차량기지 비용은 경산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철도 운영시 차량정비 등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제외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공사비를 반영하였음 ○ 기존 동대구 차량사업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검수 유지용량이 부족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검수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계획이 필요하여 열차운영 및 활용면 등에서 유리한 경산역에 배치함. 3. 원대역 신설비용(186억원)을 본 사업에 포함할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현 단계에서 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임 ○ 장래역은 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며, 향후 운영주체가 선정된 후에 추가 논의 필요 4.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대구·경북 도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구미~경산간 철도망을 구축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광역철도 사업으로서, ○ 현 단계에서 차량운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요금체계, 이용수요, 전환교통량 등 사업의 성격이 전면 바뀌게 되므로 곤란함 * 요금측면, 교통수요전환, 도로혼잡개선, 환경, 교통서비스(속도) 수준 측면에서 광역철도가 유리	

의견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의견진술자	성명 이원형(주민대표패널)	전화번호 010-3804-6476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89	
	진술 요지	1. 오래전부터 계획이 진행되었는데 예비타당성에는 포함된 역이 기본 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움 2. 예비타당성에서 통과됐는데 예산이 부족한 사유는 3. 3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원대역은 환승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4. 원대역이 장래역이 될 경우 언제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는지 궁금함	
	사업자 의견	1. 2. KDI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를 기본계획 수행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업비(시스템분야, 차량기지 등)가 있었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예타대비 20%)에 해당되었음 ○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재조사 요건 이내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용수요가 적은 순으로 왜관공단역과 원대역을 장래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3. 원대역~달성공원(3호선) 환승거리는 현재 450m로 환승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며 환승계획(지하 or 지상 전용통로) 반영시 추가 사업비 발생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해짐 ○ 경부선 상부에 3호선 역이 위치할 경우, 최적의 환승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3호선과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시기가 상이하여, 현재의 3호선 역사 위치로 결정되어 원대역이 환승역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짐. 4. 원대역 신설비용(186억원)을 본 사업에 포함할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현 단계에서 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임 ○ 장래역은 본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며, 향후 운영주체가 선정된 후에 추가 논의 필요	

2.2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

가. 환경부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국토환경 평가과	I. 사업 개요	○ 계획명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경북 구미시 ~ 칠곡군 ~ 대구광역시 ~ 경산시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기간 : 2016 ~ 2019년 ○ 사업내용 : 노선 연장 61.85km, 정거장 11개소(개량 5개소, 신설 2개소, 장래 4개소), 차량기지 신설 1개소 ※ 기존 경부선(구미~경산) 61.85km 활용	-	
	II. 검토 의견	1. 총괄 ○ 본 계획은 기존 경부선(구미~경산, 61.85km)을 활용하여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검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반영하여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초안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서)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2.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 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분야) ○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신설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의 인공구조물이 반영된 경관시물레이션을 토대로 경관변화에 대한 예측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신설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세부계획에 따라 경관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나. 수환경의 보전 분야 ○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대상 사업으로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미시, 칠곡군,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사업시행 전·후의 오염 배출부하량 등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로서,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함(연기 계획서)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국토환경 평가과	II. 검토 의견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의 침투, 저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적용하는 구체적 계획 수립·제시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부지는 빗물의 침투를 유도할 수 있는 침투도랑 등을 설치 -공원 : 공원부지는 식생수로와 식생 체류지를 결합하여 우수배제 -공공공지, 녹지대 : 주변 빗물의 침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식생수로, 침투도랑 등을 설치 -광장 : 식물재배화분, 식생체류지, 투수블록 등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차집 처리 ※‘환경영향평가시 저영향평가(LID) 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7)’ 및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평가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4) 참조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수질오염을 저감 및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활용하여 시설별 저감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겠음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녹지대, 광장 등에 적용	
		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분야 ○사업장내 성토 또는 복토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순환골재 및 친환경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특히, 도로·주차장·광장 등 포장 시에는 우수재활용 제품(CR, Dood Recycled)을 사용하는 방안 우선 검토 ※CR제품 정보시스템(http://www.buygr.or.kr)에서 제품정보 확인 가능	○사업장 내 성토재 사용시 관계법령에 따른 순환골재 및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나. 대구광역시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정책과	1.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부선 구미~경산 구간(61.85km)을 기존노선 변경없이 활용하여 광역철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개발된 도심지역으로서 녹지 및 경관, 자연식생의 훼손 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공사시 일시적인 영향으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훼손 면적을 최소화할 것	○신설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공사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훼손 면적을 최소화토록 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공사시 최대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최대한 보호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개발로 주변의 야생 동·식물에 식생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것.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2.대기 환경분야	○본 계획은 기존 정거장 개량 5개소, 정거장 신설 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신설을 계획한 바, 정거장 개량은 승강장 개량, 궤도부설(구미역 및 경산역), 흙지붕 설치(경산역) 등이 대부분이고, 정거장 신설구간은 철·성토 계획이 없어 환경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지역의 농경지 등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차량통행 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우선포장하고 출입구마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물리에 의한 자동식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폐수는 정화처리하고, 공사장 외부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공사시 주변지역의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로 선포장,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살수차 운행 등을 계획하여 비산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음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정책과	2대기 환경분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것	○ 공사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3소음·진동 환경분야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 발생 특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이행할 것이며, 주변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경계에 소음·진동규제법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지하 터파기 공사시 저소음 및 저진동 장비와 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할 것.	○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부지경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저진동 장비 및 공법을 사용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계속할 것이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사용 등 소음발생 공사의 작업시간을 08:00~18:00로 제한하고, 일요일·공휴일 작업은 자제토록 할 것	○ 공사중 민원 발생시에는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 사용시 주간(08:00~18:00) 공사 및 일요일·공휴일 작업은 최대한 자제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공사시 가설방음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생활소음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에도 불구하고 소음목표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조정 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 기존 경부선 구간을 활용하여 소음 예측치가 시설별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정운 시설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이며, 방음벽 설치구간, 높이, 형식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운영시 소음·진동영향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저감대책 수립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정책과	3.소음·진동 환경분야	○ 운영시 레일은 일정한 길이(20m, 25m)로 제조되고 궤도를 부설할 때 레일간을 볼트로 체결하기 때문에 이음부가 만들어져 충격성 진동이 발생하므로 레일 장대화, 레일연마를 통하여 진동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 운영시 진동영향 저감을 위하여 궤도 부설시 레일 장대화 및 레일 연마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진동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4.생활환경 환경분야	○ 공사시 비산먼지 등으로 주거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방지사설을 철저히 운영하고, 공사장비 분산투입 등으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장비 분산투입, 가설방진망, 살수, 차량덮개, 차속규제, 세륜·세차시설 등 저감 대책을 수립·이행하겠음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도로시설물에는 절전용 및 태양광전지와 고효율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에너지사용을 최대한 줄일 것	○ 사업시행시 전기를 사용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발생은 미미하나 친환경인증제품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토록 하겠음	
	5.기타	○ 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경조사 부실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주변 생태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즉각 강구·수립하겠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여부를 검토할 것.	○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다. 대구광역시 복구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교통 정책과		1.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소음 관리 ○공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 생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 환경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공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며 민원발생시 에는 민원인과 적극 협의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하겠음	
		2. 광역철도 운행 시 철도교통소음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항상 준 수토록 할 것.	○운행시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 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음	

라. 주민의견

의견 제출자	평가 항목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김도현 외 40명	-	○대구광역시 장래계획인 원대역을 신설계획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본계획 수립시 총 사업비를 재 검토한 결과 누락사업비(시스템 분야, 차량기지 등)의 반영으로 타당성재조사 요건(예타대비 20% 증가)에 해당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원대역과 왜관공단역을 장래역으로 반영함	